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2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7월 11일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

나. 제안이유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 증지의 종류에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안 제6조)
- 행정서식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

라. 참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승 결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의 주민등록 등초본 수입증지 전자
 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추가하고,
 또한 현재 수입증지가 발행되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증지의 종류에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